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기준일 : 2024년 01월 01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4년 01월 16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 (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1.01.)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 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펀드코드: 28125)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재산의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이자를 변동에 따른 위험,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 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채권에 투자하고 신탁재산의 3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채권부문은 우량채 중심의 매수후 보유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이익전략을 추구합니다. 주식부문은 고배당 종목 위주와 내재가치가 우수하고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여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종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이내	1.120%	0.600%	0.73%	1.1200%	164	283	406	667	1,4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420%	0.900%	1.14%	1.4262%	146	298	454	785	1,7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220%	0.700%	0.73%	1.2200%	126	256	391	677	1,49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S)	환매금액의 0.15% 이내	0.770%	0.250%	-	0.7735%	79	162	248	431	96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등 포함,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3.01.02 ~ 24.01.01	22.01.02 ~ 24.01.01	21.01.02 ~ 24.01.01	19.01.02 ~ 24.01.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004-01-02	4.67	0.04	0.17	2.19	4.79
비교지수	2004-01-02	9.57	0.22	0.65	3.32	4.75
수익률변동성(%)	2004-01-02	4.12	4.53	4.80	5.53	5.37

(주1) 비교지수 : KOSPI 30% + NPS 5년이하 채권지수 65% + call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을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 년수 (년)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주식부문 운용전문인력>										
오승훈	1991	책임운용 전문인력	20	873	8.57	N/A	8.72	2.26	4.68	
<채권부문 운용전문인력>										
윤성주	1966	책임운용 전문인력	23	2,479	8.72	N/A	8.72	2.26	22.48	
■ 이 투자신탁은 부채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17시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로 4영업일 지급 17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로 5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A, S: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C, C-e, C-f, C-g: 90일미만 이익금의 70% C-p, C-pe, C-rp, C-rpe, S-p, S-rp: 없음	환매 방법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 업자	파인만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03-98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조좌		
효력발생 일	2024년 1월 16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 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 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 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

<목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9
3. 모집(판매)예정금액	9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9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2
4. 집합투자업자	13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4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6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0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3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27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2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6
1. 재무정보	3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41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7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7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8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8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8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2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3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6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57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57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812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81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422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8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281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BP96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2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DX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DX9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DX9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DX9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DX9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p)	DX99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판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조좌까지 모집(판매)이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8125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81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422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81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281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BP96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20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DX9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DX9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DX9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DX9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DX9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p)	DX99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4.01.02	최초설정
2005.06.07	환매, 매입 기준시간 적용
2007.10.05	ING 1억만들기고배당혼합투자신탁1호로 명칭변경
2008.03.20	투자대상자산 변경(CP신용등급 A3-에서 A2-로 변경)
2009.05.03	ING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명칭변경
2010.03.16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2010년 세제변경 반영,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 이익분배금 유보, 자산운용보고서 등 우편발송 대신 공시로 갈음 가능한 경우 반영
2010.05.03	판매 수수료 정률인하
2010.06.24	종류형으로 변경
2010.09.10	주식투자한도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소규모 투자신탁 해지 및 수시공시 관련 사항 반영
2011.04.29	최근결산에 따른 정기 갱신
2012.05.21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법 개정 (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관련), 투자대상 변경(금리스왑 삭제)등
2013.03.19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2.6.29)사항 반영 등
2014.01.07	자산운용회사 명칭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서 “맥쿼리 1억만들기고배당증

	권 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변경
2014.02.21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투자대상 자산 및 취득한도 변경 종류S 신설 등
2014.09.22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15.02.25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
2016.02.18	운용전문인력 변경,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등
2016.07.02	펀드 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및 위험등급 변경
2016.11.3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2017.04.29	종류 C-g 신설,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2018.07.24	투자운용인력 및 해당 운용본부 기재, 부책임운용인력 추가
2018.12.27	운용전문인력 변경(변경일: 2018.12.31)
2019.01.11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2019.08.0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9.08.23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종류C-i→ 종류C-f)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반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20.08.20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1.05.13	자산운용회사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등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서 “파인만자산운용”으로 변경 -“맥쿼리 1억만들기고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서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으로 변경
2021.06.1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1.08.18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1.09.03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4.27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6.30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9.20	종류C-p, 종류C-pe, 종류C-rp, 종류C-rpe, 종류S-p, 종류S-rp 신설 법개정 반영
2023.02.28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3.2.20.시행)
2024.01.16	위험등급 변경(4→5등급)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파인만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 빌딩 3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4년 01월 01일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체권형) (%)				운용 경력 년수 (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주식부문 운용전문인력>												
오승훈	1991	책임운용 전문인력	20	873	8.57	N/A	8.72	2.26	4.68	- 현파인만자산운용 T1운용본부 -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2019.03~2022.05)		
<채권부문 운용전문인력>												
윤성주	1966	책임운용 전문인력	23	2,479	8.72	N/A	8.72	2.26	22.48	- 현파인만자산운용 T1운용본부 채권팀장 - 유진자산운용 채권운용팀 (2000.05~2021.12)		
■ 이 투자신탁은 부책임운용인력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1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1) 주식

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김영준	2018.12.31 – 2021.08.17
김승현	2021.08.18 – 2022.06.29
오승훈	2022.06.30 – 현재
부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정성엽	2018.07.24 – 2021.06.14

(2) 채권

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박정혁	2019.08.05 – 2020.08.19
전동화	2020.08.20 – 2021.09.02
허정기	2021.09.03 – 2022.04.26
윤성주	2022.04.27 – 현재
부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이정민	2019.08.05 – 2020.08.19
김혜리	2020.08.20 – 2021.09.02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경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f)	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차이점

종류	수수료			보수(연,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 투자	판매	신탁	일반 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 이내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0.5000	0.60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5000	0.90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5000	0.70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 (C-f)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5000	0.05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형(C-g)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5000	0.5000	0.0200	0.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30%	0.5000	0.25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형(C-p)	-	-	-	0.5000	0.40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형(C-pe)	-	-	-	0.5000	0.20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형(C-rp)	-	-	-	0.5000	0.30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형(C-rpe)	-	-	-	0.5000	0.15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형(S-p)	-	-	-	0.5000	0.1800	0.0200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형(S-rp)	-	-	-	0.5000	0.1300	0.0200	0.0000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매3개월 후급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됩니다.

주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 A2- 이상)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 유동화 증권	95%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

			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⑤-2	①, ⑤에의 투자	30% 이하	주식과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①의 주식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50% 이하
⑦	환매조건부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써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⑧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 매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⑩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④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④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⑤~⑧,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상기의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법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 -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계열사 발행 증권취득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기타 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닙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채권부문의 투자

-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합니다. 우량채 중심의 매수 후 보유를 기본으로 하되, 추가 이익전략을 추구합니다.
- ② 신용등급은 국공채와 A-이상 등급의 채권에 투자하고, 동일만기대비 저평가종목, 동일 신용등급 대비 저평가된 종목 등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주식부문의 투자

- ①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30%이하를 주식에 투자합니다. 고배당 종목 위주와 내재가치가 우수하고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여 중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저평가된 가치주 및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수익과 주가 변동성을 고려한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위험대비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투자전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② 종목분석에 입각한 Bottom UP approach (상향식방식)을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Top Down(하향식방식)을 병행 할 계획입니다.

Top Down Approach

개별주식 보다는 전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 자산배분결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거시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산업, 국가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자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Bottom Up Approach

개별주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한 경제상황, 경제 사이클 보다는 기업 자체의 전망을 가지고 주식이 선택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③ 종목선택 전략

수익 및 가치 모델을 활용한 정성적/정량적 분석 및 기업방문, 외부 애널리스트 초청 세미나 등 지속적인 리서치 활동을 통해 종목을 발굴합니다.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저평가된 가치주 및 시장평균 이상의 배당수익과 주가변동성을 고려한 종목을 선정하고, 시장상황 또는 특정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된 우량주를 편입합니다.

시장 및 업종대비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은 전략적으로 편입합니다.

* 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30% + NPS 5년이하 채권지수 65% + call 5%

NPS채권지수: 국민연금을 위해 개발된 채권시장을 대표하는 국내채권인덱스로 2004년 6월30일부터 산정되었으며, 신용등급BBB+이상의 채권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지수.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투자유니버스관리

당사의 기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유니버스에 편입될 수 있으며,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스 이외의 종목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②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③ 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3)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

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

	<p>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p>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p> <p>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p> <p>"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유동성 위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세제도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위험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 위험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4.80%**로, 파인만자산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아래)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금리하락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면서 위험 등급 5등급에 해당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이란 자산의 가격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수익률 변화의 폭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수익률 변화의 폭이 작을수록 변동성은 낮게 나타납니다. 변동성은 대상기간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계산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수익률 변동성은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로 계산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인만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동성(연환산 표준편차)기준)]

등급	1 매우높은 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 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파인만자산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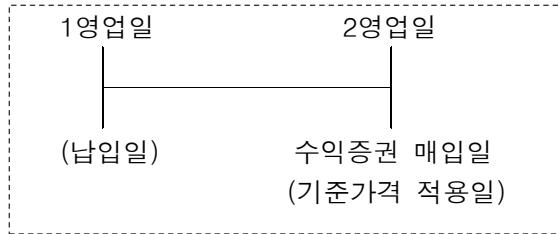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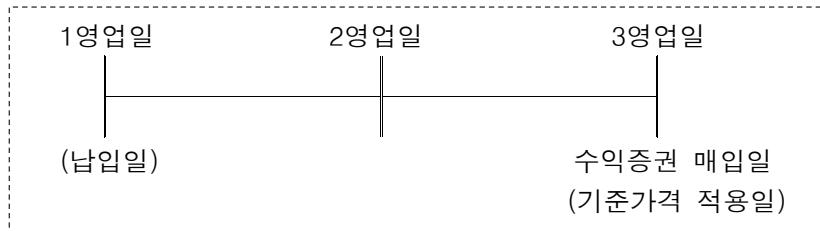
구 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직접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로서 온라인(On-line)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가입하는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가입하는 자로서 온라인(On-line)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S-r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가입하는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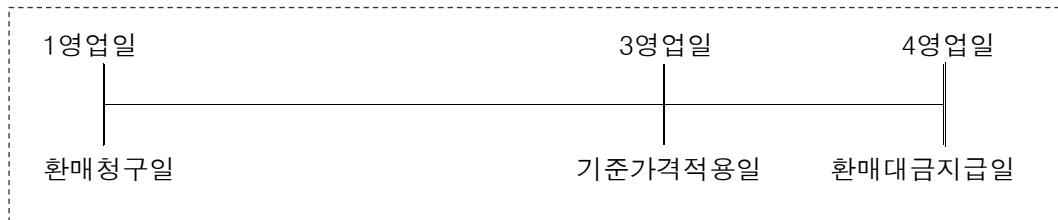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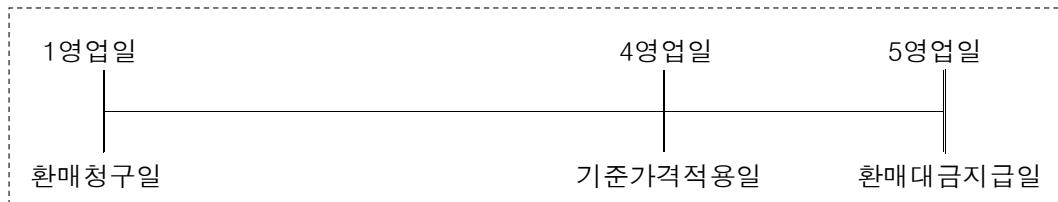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①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빈번한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거래비용 및 각종기회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환매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간, %)			비고 (지급시기)
종류	종류A, 종류S	종류 C, C-e, C-f, C-g	종류 C-p, C-pe, C-rp, C-rpe, S-p, S-rp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없음	환매시

주1)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종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 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 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 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 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경우 그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유가증권으 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5% 이내	-	30일미만: 이 익금의 70% 90일미만: 이 익금의 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	90일미만: 이 익금의 7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형(C-g)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0일미만: 이 익금의 70% 90일미만: 이 익금의 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	-	-	-	-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 (S-rp)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됩니다.

주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총보 수·비용 (피투자집 합투자기 구 보수 포함)	증권거 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 인형(A)	0.5000	0.6000	0.0200	0.0000	1.1200	0.0000	1.1200	0.7300	1.1200	0.0840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형(C)	0.5000	0.9000	0.0200	0.0000	1.4200	0.0062	1.4262	1.1400	1.4262	0.1005
수수료미징구-온라 인형(C-e)	0.5000	0.7000	0.0200	0.0000	1.2200	-	1.2200	0.7300	1.220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기관형(C-f)	0.5000	0.0500	0.0200	0.0000	0.5700	-	0.5700	-	0.570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무권유저비용 형(C-g)	0.5000	0.5000	0.0200	0.0000	1.0200	-	1.0200	-	1.0200	-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형(S)	0.5000	0.2500	0.0200	0.0000	0.7700	0.0035	0.7735	-	0.7735	0.1026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개인연금형 (C-p)	0.5000	0.4000	0.0200	0.0000	0.9200	-	0.9200	-	0.9200	-
수수료미징구-온라 인-개인연금형 (C-pe)	0.5000	0.2000	0.0200	0.0000	0.7200	-	0.7200	-	0.720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퇴직연금형 (C-rp)	0.5000	0.3000	0.0200	0.0000	0.8200	-	0.8200	-	0.8200	-
수수료미징구-온라 인	0.5000	0.1500	0.0200	0.0000	0.6700	-	0.6700	-	0.6700	-

인-퇴직연금형 (C-r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 (S-p)	0.5000	0.1800	0.0200	0.0000	0.70000	-	0.70000	-	0.700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 (S-rp)	0.5000	0.1300	0.0200	0.0000	0.6500	-	0.6500	-	0.650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 시	-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1.02 ~ 2024.01.01]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70

주2)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 국내/해외 주식매매수수료, 국내/해외 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증개수수료, 스왑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1.02 ~ 2024.01.01]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772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자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

주7)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설정된 펀드로 업무위탁한 후로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동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164	283	406	667	1,4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146	298	454	785	1,7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26	256	391	677	1,49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형(C-f)	59	121	185	323	7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형(C-g)	105	215	328	569	1,26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79	162	248	431	9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 (C-p)	97	197	302	524	1,16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 (C-pe)	76	154	237	411	9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 (C-rp)	86	176	269	468	1,0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 (C-rpe)	70	144	220	383	8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 (S-p)	89	182	262	431	9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형 (S-rp)	68	139	214	372	83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S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주3) 종류A 수익증권과 종류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7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11월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p>[납입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p>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p> <p>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 <p>※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p>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 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대상 금액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0기 (2023.01.02 – 2024.01.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9기 (2022.01.02 – 2023.01.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8기 (2021.01.02 – 2022.01.01)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재무정보는 모두 운용편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1(채혼)

[단위 : 원]

항 목	통합 재무상태표		
	제 20기 (2024.01.01)	제 19기 (2023.01.01)	제 18기 (2022.01.01)
운용자산	2,542,703,371	3,169,937,057	3,561,184,731
증권	2,522,374,126	2,377,411,512	3,442,112,67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0,329,245	792,525,545	119,072,05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5,295,413	38,507,657	78,380,434
자산총계	2,567,998,784	3,208,444,714	3,639,565,16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8,930,123	11,372,049	12,961,274
부채총계	8,930,123	11,372,049	12,961,274
원본	2,211,308,942	2,891,682,446	3,136,153,604
수익조정금	-198,291,583	-157,286,829	-249,834,569
이익잉여금	546,051,302	462,677,048	740,284,856
자본총계	2,559,068,661	3,197,072,665	3,626,603,891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1(채혼)

[단위 : 원, %]

항 목	통합 손익계산서		
	제 20기 (2023.01.02 - 2024.01.01)	제 19기 (2022.01.02 - 2023.01.01)	제 18기 (2021.01.02 - 2022.01.01)
운용수익	173,566,525	-107,233,120	89,707,426
이자수익	52,471,599	44,374,889	35,914,429
배당수익	4,600,072	48,689,457	30,708,282
매매/평가차익(손)	116,494,854	-200,297,466	23,084,715
기타수익	0	0	11,043
운용비용	38,995,483	48,124,867	65,431,142
관련회사 보수	38,995,483	48,124,867	65,431,142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116,344,871	-155,368,150	-177,391,062
당기순이익	250,915,913	10,163	201,678,389
매매회전율	197.32	104.66	110.73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 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18기 0백만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18기 0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1(채혼)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3.01.02 - 2024.01.01)			전기(2022.01.02 - 2023.01.0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751	2.7540	0.1001	1,813	2	0.0932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 대차, 콜 등)	12,700	0.0177	0.0001	8,100	0	0.0002
합계	15,451	2.7717	0.0179	9,913	2	0.0172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파인만1억만들기고배당1(채혼)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42,193	1,312	49,686	1,443	731	197.32	31.92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20기(2024.01.01)		제19기(2023.01.01)		제18기(2022.01.0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용자산						
현금및예치금						
1. 현금및현금성자산	20,329,245		20,329,245		792,525,545	
2. 예치금						119,072,053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00,000,000				
3. 매입어음						300,000,000
4. 대출금						
유가증권						
1. 지분증권	716,581,290		2,422,374,126		2,377,411,512	
2. 채무증권			768,981,350			940,194,550
3. 수익증권	1,705,792,836		1,608,430,162			2,201,918,128
4. 기타유가증권						3,142,112,678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타자산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5,295,413		38,507,657	
2. 정산미수금						78,380,434
3. 미수이자	20,523,207					
4. 미수배당금		4,772,206				
5. 기타미수입금				7,461,535		56,028,934
6. 기타자산				31,046,122		22,351,500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567,998,784		3,208,444,714		3,639,565,165
부 채						
운용부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타부채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8,930,123		11,372,049		12,961,274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8,930,123			11,372,049		12,961,27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8,930,123		11,372,049		12,961,274
자 본						
1. 원 본	2,211,308,942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2,891,682,446		3,136,153,604	
3. 이월잉여금	347,759,719					
(발행좌수 당기):	2,211,308,942	좌				
전기:	2,891,682,446	좌	이익잉여금	546,051,302		740,284,856
전전기:	3,136,153,604	좌)		-198,291,583		-249,834,569
(기준가격 당기):	1,132.14	원				
전기:	1,106.79	원				
전전기:	1,154.14	원)				
자 본 총 계		2,559,068,661		3,197,072,665		3,626,603,891
부채와자본총계		2,567,998,784		3,208,444,714		3,639,565,16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20기(2023.01.02-2024.01.01)		제19기(2022.01.02-2023.01.01)		제18기(2021.01.02-2022.01.0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57,071,671	44,374,889	93,064,346	35,914,429	66,633,754
1. 이자수익	52,471,599		48,689,457		30,708,282	
2. 배당금수익	4,600,072				11,043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53,959,015	82,638,234	86,873,277	374,770,094	377,376,475
1. 지분증권매매차익	134,073,506		4,235,043		2,330,08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10,881,205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09,004,304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76,297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37,464,161	150,609,081	287,170,743	48,011,198	354,291,760
1. 지분증권매매차손	132,272,782		44,441,449		19,883,33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5,191,379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91,700,213		286,397,223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420,000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13,779,558	-1,242,406,888	16,999,774	-1,815,058,564	23,095,118	-2,063,816,838
2. 판매수수료	24,665,165		30,445,558		41,412,715	
3. 수탁수수료	550,760		679,535		923,309	
4. 투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1,281,402,371		-1,863,183,431		-2,129,247,98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415,973,413		1,707,825,444		2,153,535,30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640332694		0.590599236		0.686668043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1.02 – 2024.01.01	0	0	0	0	0	0	0	0
2022.01.02 – 2023.01.01	0	0	0	0	0	0	0	0
2021.01.02 – 2022.01.01	0	0	0	0	0	0	0	0

주 1) 2023.01.02 – 2024.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698 좌/3,085 원

주 2) 2021.01.02 – 2022.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1 좌/80 원

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1.02 – 2024.01.01	29	32	0	0	7	8	22	25
2022.01.02 – 2023.01.01	31	36	0	0	3	3	29	32
2021.01.02 – 2022.01.01	42	48	1	2	12	14	31	36

주 1) 2023.01.02 – 2024.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026,535 좌/21,795,078 원

주 2) 2021.01.02 – 2022.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84,415 좌/213,225 원

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판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3.01.02 – 2024.01.01	0	0	0	0	0	0	0	0
2022.01.02 – 2023.01.01	0	0	0	0	0	0	0	0
2021.01.02 – 2022.01.01	0	0	0	0	0	0	0	0

주 1) 2023.01.02 – 2024.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469,572 좌/530,926 원

주 2) 2022.01.02 – 2023.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3,593 좌/92,274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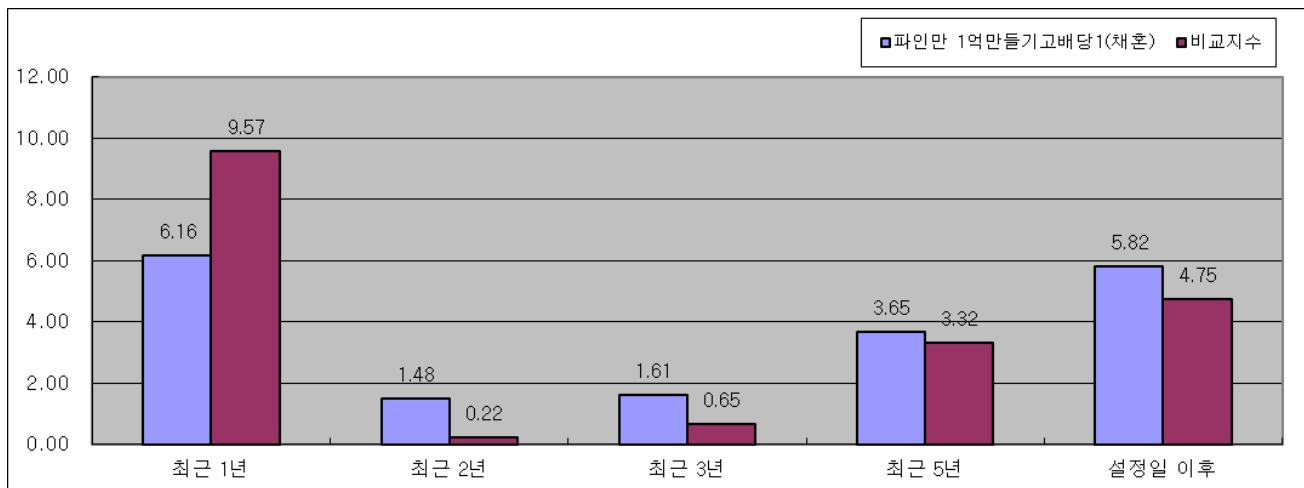
주 3) 2021.01.02 – 2022.01.0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63,491 좌/188,521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1.02 ~ 24.01.01	22.01.02 ~ 24.01.01	21.01.02 ~ 24.01.01	19.01.02 ~ 24.01.01	04.01.02 ~ 24.01.01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 1(채혼)	6.16	1.48	1.61	3.65	5.82
비교지수	9.57	0.22	0.65	3.32	4.75
수익률변동성(%)	4.12	4.53	4.80	5.53	5.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5.05	0.41	0.54	2.44	2.74
비교지수	9.57	0.22	0.65	3.32	3.23
수익률변동성(%)	4.12	4.53	4.80	5.53	4.75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형(C)	4.67	0.04	0.17	2.19	4.79
비교지수	9.57	0.22	0.65	3.32	4.75
수익률변동성(%)	4.12	4.53	4.80	5.53	5.3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5.35	0.70	0.83	2.86	1.28
비교지수	9.57	0.22	0.65	3.32	1.30
수익률변동성(%)	4.12	4.53	4.80	5.53	5.37

주1) 비교지수 : KOSPI 30% + NPS 5년이하 채권지수 65% + cal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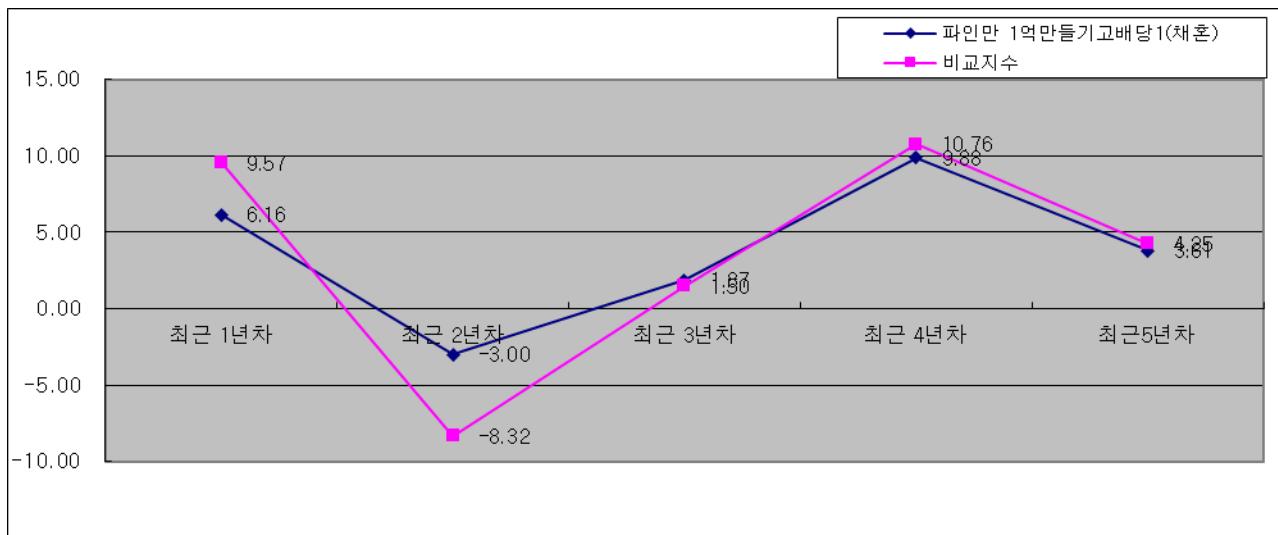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3.01.02 ~ 24.01.01	22.01.02 ~ 23.01.01	21.01.02 ~ 22.01.01	20.01.02 ~ 21.01.01	19.01.02 ~ 20.01.01
파인만 1억만들기고배당 1(채 혼)	6.16	-3.00	1.87	9.88	3.81
비교지수	9.57	-8.32	1.50	10.76	4.25
수료선취-오프라인형(A)	5.05	-4.03	0.80	8.12	2.66
비교지수	9.57	-8.32	1.50	10.76	4.25
수수료미정구-오프라인형(C)	4.67	-4.38	0.43	8.33	2.35
비교지수	9.57	-8.32	1.50	10.76	4.2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5.35	-3.75	1.09	9.04	3.03
비교지수	9.57	-8.32	1.50	10.76	4.25

주1) 비교지수 : KOSPI 30% + NPS 5년이하 채권지수 65% + call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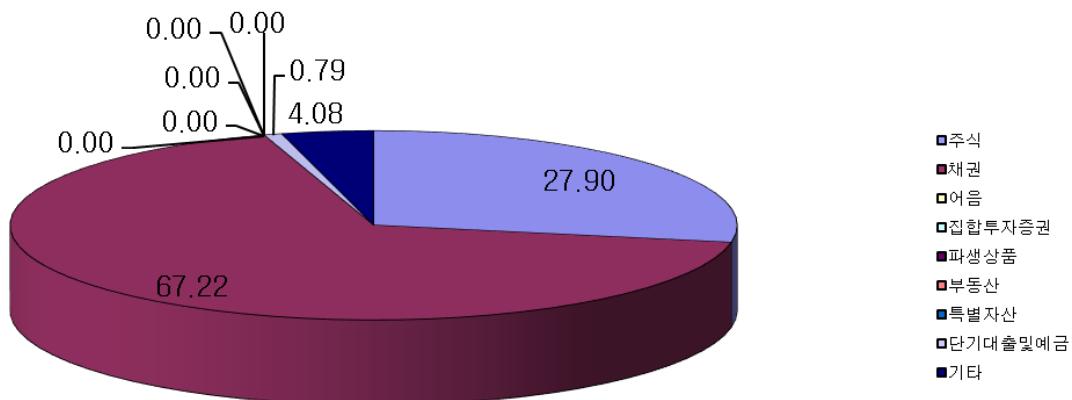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6)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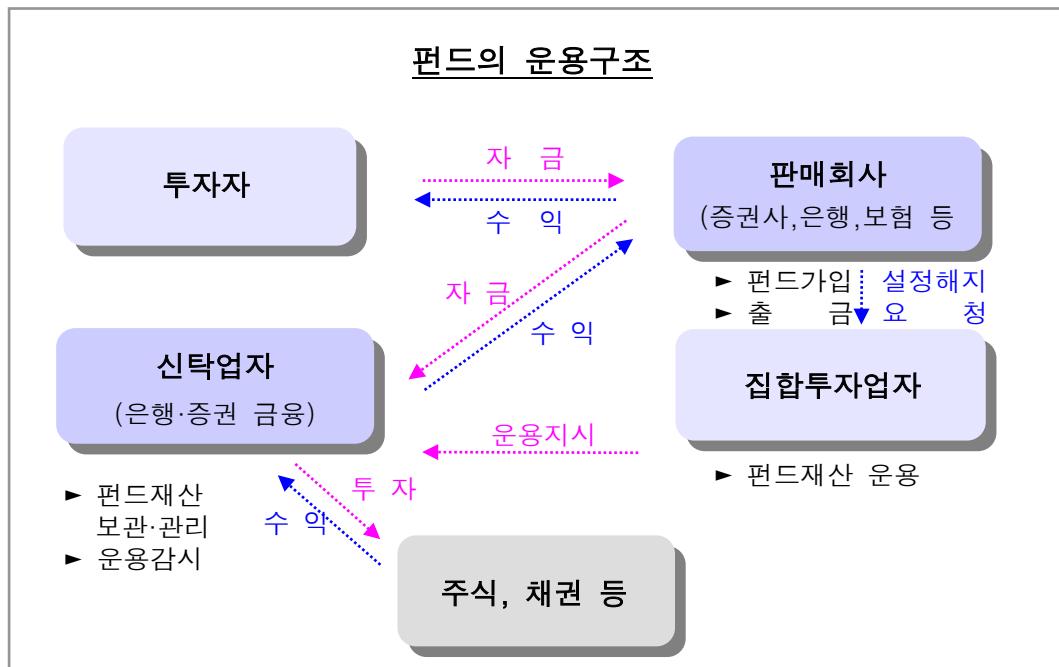
[2024.01.01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7	17	0	0	0	0	0	0	0	0	1	26
	(27.90)	(67.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9)	(4.08)	(100.00)
합계	7	17	0	0	0	0	0	0	0	0	1	26
	(27.90)	(67.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9)	(4.08)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파인만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 빌딩 3층 (전화)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feynmanasset.com
회사 연혁	<p><외환코메르쓰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 (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쓰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p><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쓰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 <p><ING 자산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 <p><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상호변경 2021.04.09 파인만1호주식회사가 100% 지분인수 <p><파인만자산운용 주식회사></p>

자본금 주요주주현황	2021.04.09 파인만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15,049,570,000원
	파인만1호주식회사: 지분율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억원)			요약 손익계산서(억원)		
계정과목	'22.12.31	'21.12.31	계정과목	'22.12.31	'21.12.31
현금및예치금	68.7	89.0	영업수익	29.5	22.4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16.8	6.1	영업비용	42.6	35.6
유형자산	4.5	7.7			
무형자산	1.6	0.6			
기타자산	6.0	5.6			
자산총계	97.6	109.0	영업손실	-13.1	-13.2
출당부채	0.9	0.9	영업외수익	0.3	-0.4
기타부채	4.5	7.0	영업외비용	0.2	0.3
부채총계	5.4	7.9	법인세차감전순손실	-13.0	-13.9
자본금	150.5	150.5	법인세비용	-4.1	-
자본잉여금	25.2	25.2	당기순손실	-8.9	-13.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	-2.2	기타포괄손익	-	-0.2
이익잉여금(결손금)	-81.3	-72.4			
자본총계	92.2	101.1	당기총포괄손실	-8.9	-14.1

라. 운용자산 규모

(2024.01.01. 현재)(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96	39	284	0	16	499	0	330	5,921	181	2,141	10,30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해외 업무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연락처 : 1588-9999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6)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8)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현대차증권 18~20층) 연락처 : 02-2180-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 P&I(주)
-----	--------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 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4층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

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관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폐합수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당사 홈페이지 공시 등)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 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1)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p>① 증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적인 증개회사 평가를 통해 증개회사와 증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증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증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p>③ 증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증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자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증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자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

	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과보수	성과보수는 집합투자규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교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